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493번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16명
- 발 의 일 : 2021년 5월 28일
-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명처리” 용어 정의(안 제2조제1의2호)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6항, 제13조의2).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다.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제7조).
- 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위원을

증가하고, 위원장을 당역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함(안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6. 6. ~ 6. 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되고(안 제6조, 제7조),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가명처리”에 대한 정의와 가명정보 처리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제3조제6항, 제13조의2) 등의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1)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정의)	- “가명처리” 정의 규정 신설(제1호의2)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의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원칙 신설(제6항)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수립)	- 중복되는 약칭 문구 삭제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 정보 관리·감독 기관 변경(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 개인 정보 관리·감독 기관 변경(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	- 위원회 기능을 심의 → 심의·자문으로 변경(제10조 본문) -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제4호~제6호 신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 증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제1항) - 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 추가(제2항제6호~제8호 신설) -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당연직 부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함(제3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 직무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제1항) - 정기회 연1회 → 연 2회(제2항) - 심의 안건 긴급하거나 유사·반복 시 서면이나 소위원회 심의(제5항) - 실무협의회 신설(제6항)

제12조의1(소위원회)	- 소위원회 규정 신설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
부칙	- 공포일 즉시 시행

- 안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었으나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난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 또한, 일부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제3장 제3절)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전기관의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가명처리” 정의와 원칙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제3조제6항)

- 안 제2조제1호의2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2.4., 시행 2020.8.5.)(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서울 시도 전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처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제1의2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의 각 호에 따라 조례에서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경제학적 측면과 향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각 호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라고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u>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가명처리”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u>보호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지만,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한다고 하고 있음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8면 참조).

- 안 제3조제6항은 법 제3조제7항¹⁾의 원칙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과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⑤ (생략)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	--

2) 가명처리 절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2는 서울시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전기관의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였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2.4., 시행 2020.8.5.)에 마련하였음.

<p>「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p> <p>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또한, 가명정보 처리업무 세부절차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하고 있는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가명정보 처리 목적 위반, 추가정보 제3자 제공, 가명정보 결합제한 위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가명정보 이용,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개인정보 가명화·익명화 조치 등 비식별화를 위한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가명화용 데이터 분리보관 및 파기, 안전조치 등을 통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확대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가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음.

○ 가명화 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 : 추진중

- 현재, 서울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가명처리 지침(안) 및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 및 중앙부처 등의 가명처리 사례, 절차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6월중 확정할 예정임

○ 추진현황(예정)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 : 6월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 6월
-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7월 ~

※ 가명화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교육

가명·익명처리 관련 법·제도 이론 및 실습 교육 지원



컨설팅

가명·익명처리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테스트베드

가명처리 관련 기술 테스트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분석 공간과 장비 지원



결합지원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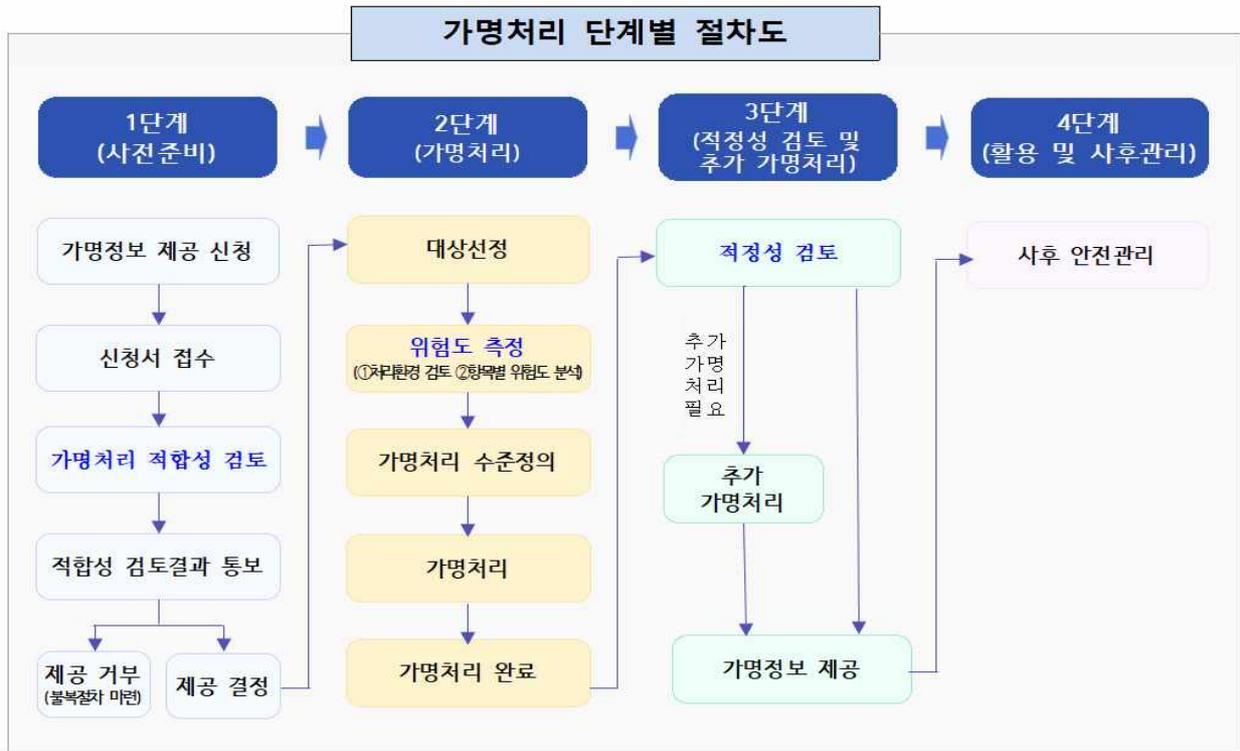
문의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국민·기업의 질의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절차

- 가명처리 개요 : 서울시 전기관(본청, 사업소) 보유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가명처리 요구 시, 대상(신청)부서에서 진행할 가명처리 절차 및 단계별 처리내용, 수행부서 역할 규정
- ※ 본 가명정보 처리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적용

- 가명정보 처리절차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요구자료 916 제출자료(2021. 5.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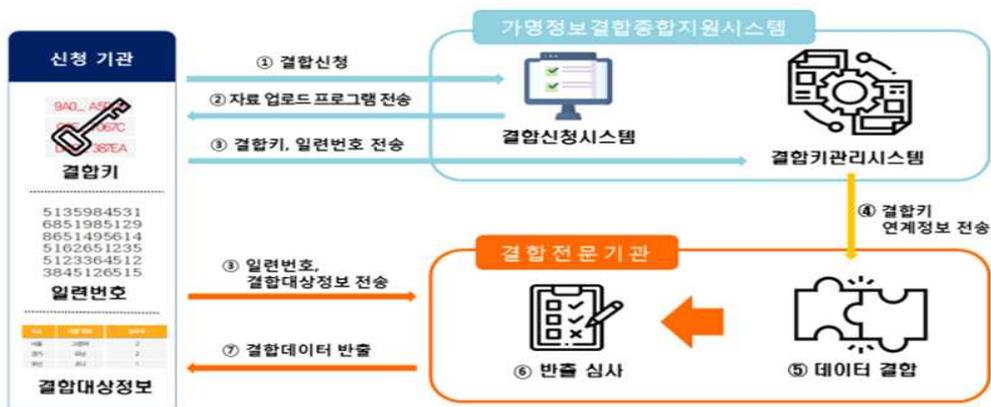
- 안 제13조의2제4항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2)의 전담 결합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함.
- ※ “가명정보의 결합”은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는 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함.
- 이는 서울시가 가진 가명정보를 반출하여 위원회가 정한 결합전문기관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진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결합 신청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 가명정보 결합신청 및 절차



- ①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에서 결합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결합신청서 작성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
- ② 결합신청서 → 지정한 결합전문기관 전달
- ③ 결합전문기관 : 결합신청서 접수
- ④ 관련자료 및 정보전송
 - 결합신청자 : 〈결합키 + 일련번호〉 전송 ⇒ 결합키관리기관(KISA)
 - 결합키관리기관 : 〈결합키 연계정보〉 전송 ⇒ 결합전문기관
 - 결합신청자 : 〈일련번호 + 결합대상정보〉 전송 ⇒ 결합전문기관
- ⑤ 결합 및 반출절차 진행
 -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한 비용 청구 : 결합신청자가 비용 지급

○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구분	지정기관	보건복지부	국도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지정일시		'20.10.29	'20.11.24	'20.11.27	'21.01.10	'20.08.06
결합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삼성에스디에스(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20.12.22)

※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금융 등 신청기관에 따라 분야별 지정기관 선정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요구자료 916 제출자료(2021. 5.28.) 참조.

결합 절차 안내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결합 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 정책·법령 > 기업정책 > 개인정보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참조(최종방문 2021. 6.1.)

- 다만,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고, 결합된 정보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데이터의 재식별 또는 재결합 시도나 결합 목적 외의 활용 금지는 물론, 정보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³⁾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주요 내용

-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 재식별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u></p> <p><u>③ 가명정보 처리업무 세부절차 및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u></p>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제정·시행 2020.8.11.)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문의 신설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 순서가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의2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게 됨.

- 다만, 조례의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장 등의 책무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인바, 조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두고, 총칙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서는 ① 목적규정, ② 기본이념규정, ③ 정의규정, ④ 해석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⑥ 적용 범위규정, ⑦ 다른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순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75-76면 참조).

4)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일부개정 2020.8.4., 시행 2021.2.5.)(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4)에서 시·도 개인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다만, 서울시는 2016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⁵⁾하여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와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위원 구성이나 역할이 협의회와 일부 중복되므로,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와 요구사항인 위원구성 및 역할을 추가하여(붙임 1) 표준조례안 참조)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기존 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협의회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협의회로 하지 않고 추진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2021년 3월 2일 회신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 기 능 :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 성 : 15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내부위원(1명) : 스마트도시정책관(위원장)

·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음(서울특별시조례 제6217호).

- 회의진행 :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임시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명 이내 구성 위원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위원장 1명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사 1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기 1명 : 개인정보보호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명 이내 구성 위원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 1명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1명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 자치구의 개인정보총괄 관련 국장(4급) -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사 1명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정보시스템담당관) 서기 1명 : 개인정보보호팀장
기능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제1항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로 증원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위원 정수 증원은 협의회 구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원(자치구의 개인정보총괄 관련 국장(4급),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구성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바(평균 73%), 위원 정수 확대 이후에도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독려 방안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안 장치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실적(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정책반영내용	온라인 개최여부
'19.3.15	정기회의 (2019-1차)	10명 (총15명)	66.7%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신규위촉 ○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 스마트사업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이슈 검토	○ 신규위원 위촉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반영	오프라인 개최
'19.8.30	정기회의 (2019-2차)	9명 (총15명)	60.0%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중간보고 ○ 개인정보 보호 추진실적 및 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책자문 등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반영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반영	오프라인 개최
'20.6.5	정기회의 (2020-1차)	13명 (총15명)	86.7%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 재위촉 ○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 자문 등	○ 위원 재위촉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반영	오프라인 개최

'20.11.23	임시회의 (2020-2차)	11명 (총15명)	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 ○ 개인정보 가명처리 업무 추진 절차 및 계획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반영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안 반영 	오프라인 개최
'21.2.16	정기회의 (2021-1차)	12명 (총15명)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보고 및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 개정(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반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의회 기능 추가·통합 운영 	오프라인 개최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2019년-2021년 5월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2019년	6,250	5,020	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토·참석수당 : 2,550천원 ○ 회의부대비용 : 2,470천원
2020년	6,000	3,700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토·참석수당 : 3,150천원 ○ 회의부대비용 : 542천원
2021년 5월	6,000	2,388	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토·참석수당 : 2,000천원 ○ 회의부대비용 : 388천원

○ 안 제11조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 심의·자문하기 ----- ----- ----- 1. ~ 3. (현행과 같음)

<p><신설></p>	<p>4. <u>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5. <u>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u>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p>	<p>6. <u>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u></p> <p>7. -----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p>
<p>② (생략)</p> <p>1. <u>조례 제5조의 -----</u></p> <p>2. ~ 5.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제5조의 -----</u></p> <p>2. ~ 5. (생략)</p>
<p><신설></p>	<p>6. <u>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 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신설></p> <p><신설></p>	<p>7. <u>자치구의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련 국장(4급)</u></p> <p>8. <u>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u></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u>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9. -----</p> <p>③ <u>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u></p>
<p>④ ~ ⑤ (생략)</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② 위원회 운영(안 제12조)

- 안 제12조제1항은 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협의회에 관한 표준조례안에서는 정기회를 연 4회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 안 제12조제5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심의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심의 안건의 경우로 한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⁶⁾에서는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2조제6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협의회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 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를 둘 수 있다.

- 이는 서울시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장의견 수렴 및 전달, 정책·기술 등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12조(위원회의 운영)</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위원장</u>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u>연 1회</u>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p> <p>① ----- ----- ----- <u>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u>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 ----- <u>연 2회</u>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u></p> <p>⑥ 제10조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서기는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담당한다.</p>	<p>⑦ -----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p>
<p>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 ----- ----- ----- ---</p>
<p>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⑨ ----- ----- -----</p>
<p>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p>	<p>⑩ ----- -----</p>

② 소위원회 신설(안 제12조의1)

○ 안 제12조의1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안 제1항), 소위원회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항).

- 다만, 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안 제4항) 있으나,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안 제3항) 있으므로 의결정족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는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7)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처리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⁸⁾ 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소위원회가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항제1호),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재식별가능성이 없는지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성격, 가명정보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여부를 결정
-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처리자가 정의한 가명처리 수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년 9월, 12면, 22면 참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⑥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공무원(개인정보총괄부서장, 가명처리수행부서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붙임 1 00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00시(도)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00시(도)에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00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00시 행정부시장(부지사)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1. 00시(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 자치구(시·군)의 부구청장(부시장·부군수)
3. 00시(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00시(도) △△국장('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00시(도) △△국장('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의사항의 처리) 시장(도지사)은 협의회가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